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3월 26일 (수) · 제13호 · 제1720호
판권
신규
주요
해설
11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3/ 26 통권 172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2): 조직(structure)
- 미사용자산 및 유류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 상장회사 결산시즌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유의하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계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 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해 환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 안되고, 부가세 과표에 합산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중소기업의 판별 기준(중소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념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업종범위	모든 업종(전문 면허업 제외)	열거된 모든 사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주업판단	3년평균매출액 최대업종	해당 과세연도 매출 최대 업종
비영리포함	제외함(사회적 기업은 가능)	가능함(유권해석 : 서면인터넷-391, 2006. 2. 21)
업종별 규모	3년 평균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	해당연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규모 상한	직전년 재무상태표 자산 5천억 미만	해당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독립성 충족	①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아닐 것 ② 자산 5천억 이상 회사 30% 이상 소유 안됨 ③ 소속집단 합산 매출 3년 평균규모 기준 이하	①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아닐 것 ② 자산 5천억 이상 회사 30% 이상 소유 안됨 ③ 해당연도 합산매출액 규모 이하
유예기간	중소기업 규모 확대 : 기준 초과시 5년간은 유예 적용	규모확대연도와 + 5년간 유예
유예 제외	대기업집단에 합병·편입된 경우	좌동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0호 / 주간 13호

2025. 3. 2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소기업의 판별 기준(중소기업법·조특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2): 조직(structure)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의 과세 - 수입 물품 단가 조정에 따른 회계 처리 - 매입 세금 계산서 지연수취 - 특수관계인(법인)에게 차량 매각시 문의 사항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미사용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방법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 10억원 아파트 계약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의 세금 차이	9 10
직장인Survival	대화중 방어심리를 자제하는 법 ㉔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기준법규기본-169, 2024.09.24) -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③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56, 2024.06.10)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다주택자 증과세 폐지' 추진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해 환급하는 금액은 예누리에 해당 안되고, 부가세 과표에 합산됨	12
세무정보	-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15 27 33
회계정보	- 상장회사 결산시점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유의하세요	4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2): 조직(structure)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은행, 증권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가 도입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사의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구축 운영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통제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분장, 적절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및 보수 및 보상 체계를 갖춘 건전한 구조가 핵심적이다*.

* Guidelines for governance, 1st Edition 2021, IIA Norway., pp. 11-12.

조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와 전략, 가치, 행동 및 문화에 관한 명확성을 전제로 한다. 경영 외부환경 및 제약 조건을 파악하여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실무적 기본 관점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직, 책임, 권한

조직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조직 구조는 조직 내 역할, 책임, 권한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책임과 권한 위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는 소유주부터 직원 개개인까지 명확히 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공정성 지침이 수립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가치 손실을 방지하는 감독 역할을 한다. 이는 효율적이고 가치 창출적인 경영 구조를 포함한 운영의 전반적인 조직을 승인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수준의 경영진은 이사회에 따라 적절한 조직 및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 유지 및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고위 경영진에게 승인된 책임 및 권한 구조를 준수하고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CEO의 보수뿐만 아니라 고용, 평가 및 잠재적인 해고 등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및 인증 활동의 관리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임원 관리자의 보수에 대한 지침을 승인해야 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은

- 이사회 헌장을 작성하고 승인하며 이사회 업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자체 활동의 기능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 명확하고 적절한 책임과 권한 구조를 수립하고 문서화한다. 책임과 권위에 대한 매트릭스(Matrix) 활용, 직무 설명서 등의 작성이 유용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운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처리, 조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관리구조 확립하여야 한다.
-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인식 제고,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을 수 있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보장한다.
- 모든 결정이 해당 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에게 추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이해상충 처리 규칙을 수립 전달하고 그 준수성을 확보한다.

◎ 정보와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건전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에 전달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형식의 신뢰할 수 있으며 시의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는 성공적인 조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정보는 조직 내외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정보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와 원천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인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계획, 책무성, 이해관계자 매트릭스(관련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케이션할 정보 유형)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은

- 정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대상 그룹 및 이해 관계자를 정의한다.
-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역할과 책임, 업무를 명확히 한다.
-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수집 및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이사회, 경영진 및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적절한 범위, 정확성 및 구체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보고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수와 보상체계(Remuneration and reward schemes)

보수 및 보상 체계는 기업의 목표와 가치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보수 및 보상 제도에는 모든 직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의 목표와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보수와 보상제도는 임직원의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고 불필요한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은

-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건전하다고 여겨지는 보수와 보상제도를 채택한다.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성과보수 지급이 필요한 직무에는 고정보수와 성과에 의한 변동보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한다.
- 이사회가 승인한 경영자의 보수와 다른 경영 관리자 및 특수 업무수행직원에도 구체적인 보수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 보수와 보상 계획 특히 고정 보수와 변동 보수 및 조정에 관한 주요 원칙과 기준을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이에 관한 투명성과 수용성을 확보한다.
- 새로운 보수체계나 보상계획 또는 변경시 경영진과 노조간의 대화를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절차를 수립 운영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새롭게 설정한 기업의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조직 구조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의 과세

- Q** 소득세법 질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퇴직한 직원에게 금번 장기근속포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직원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법령상 필요경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기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A**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법정필요경비는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 물품 단가 조정에 따른 회계 처리

- Q** 자사는 올해 8월부터 일본에서 DDP (관.부가세 인도자 부담)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조건 하에 기존 단가에서 10%를 인상하여 매입하다가 자사가 세관의 부가세가 납부 유예되는 사실을 추후 인지하고 일본측에 이미 지급된 3개월 금액을 소급해서 Credit note를 발급하여 상계하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매입 수불과 원가 처리된 금액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급된 금액 만큼 매출원가 또는 매입할인으로 전표 계정 처리만 하고 수불과의 차이를 소명해도 되는 걸까요?
- A** 소급된 금액만큼만 매출원가나 매입할인으로 전표 계정처리하시고 수불과의 차이를 소명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Q**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하여 자문 요청드립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 후
작성일자 2024.12.01/ 발급일자 2025. 3. 2 자로
마이너스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24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임)를 자문요청 드립니다.

- A** 기존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정상적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합계표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법인)에게 차량 매각시 문의 사항

- Q** 당사의 관계법인에게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 1) 차량을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신설법인이라 잔존가액이 시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시가로 매각해야 한다면, 차량의 시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 A**
1.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잔존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중고차 시세가 잔존가액 이하면 별 문제 안됨).
 2. 시가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거래가액이므로 중고차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과 비용처리계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취득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동을 중단한 자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회계상 미사용자산 및 가동중단 자산도 감가상각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현행 기업회계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가동중지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사용 자산 또는 가동중지 자산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미사용 자산, 장기간 가동중지 자산, 단기간 가동중지 자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감가상각을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회계반영을 하면 된다.

◇ 일반기업회계제10장 유형자산

10.35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무상로는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인정함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 유휴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하지만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및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일시적 유

휴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다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동중지에 있는 유희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미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미사용자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희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서면2팀-1107, 2006.06.1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희설비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71, 2005.12.0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한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구분	비과세	감면
개념	과세권 포기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 경감
세금발생 유무	없음	감면세액의 20% 발생(농특세)
세금신고 유무	없음 (단, 고가주택 비과세는 신고)	신고의무 있음
사례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등



보유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A씨	B씨
소유부동산	다가구주택 1채	주거용 오피스텔 3채
월세	월 300만원(연 3600만원)	
종합소득세	0원	연 256만원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0원	월 12만원(연 144만원)
세금과 건보료 합계	0원	연 400만원



10억원 아파트 계약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세금 차이

구분	단독 명의	공동명의(1인분)
양도가액	100,000만원(10억원)	좌동
(-) 취득가액	50,000만원(5억원)	
(-) 필요경비	1,000만원	
양도차익	49,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4,900만원(5년, 10%)	
양도소득금액	44,100만원	44,100만원*0.5 = 22,05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 과세표준	43,850만원	21,800만원
세율	40%	38%
누진공제	(-) 2,594만원	(-) 1,994만원
양도세	149,460,000원	62,900,000원
지방소득세	14,946,000원	6,290,000원
총 납부세액	164,406,000원	69,190,000원

(자료: 이코노미칸)



발의된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에 따른 예상 상속세액

배우자가 35억원 전액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4억2500만원



발의안
0원

배우자 25억원, 자녀 각각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4억2500만원



발의안
8600만원



대화 중 방어심리를 자제하는 법 ②

4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질문한다

상대의 비난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라. 예를 들어 상대가 "넌 늘 날 무시해"라고 말한다면, "내가 널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하나 말해 줄래?"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질문은 명확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단, 질문과 말꼬리 잡기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라.

5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상대가 하는 말 중 겨우 7퍼센트 정도만 동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공통부분을 찾아라. 만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상대의 솔직한 태도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상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6 당신 뒤통에 대해 사과한다

당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자기 뒤통을 사과함으로써 전투가 협력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상대의 뒤통에 대한 생각은 다음으로 미뤄라.

7 상대방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음을 알린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상대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하라. 그리고 정말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8 상대가 감정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저 방어적인 반응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마워.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라는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최신 판례 예규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기준법규기본-169, 2024.09.24

질 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한 경우 내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종료 전에 과세처분한 경우에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 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판결)*이 내려짐

* 과세처분 취소 결정(판결)일 기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질의

-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불복청구 결과 취소된 경우로서 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 만료 되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해 환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 안되고, 부가세 과표에 합산됨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862, 2024.06.25

질 의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56, 2024.06.10

■ 질 의

- 질의인은 박사학위 취득 후 '18.3.1.부터 '23.2.28.까지 외국 ****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국내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3.1.4. 조기 퇴직하여 귀국함
 - 국내 @@대학교 임용을 위해 퇴직하였으나 외국 ****와 수행하던 연구 중 마무리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논문작성 및 단백질 구조 규명 등의 공동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 '23.1월 및 12월에 관련 논문 등을 출판할 때도 소속기관을 ****와 @@대학교를 병기함

질의

-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국내 복귀하여 취업하였으나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한 경우 이를 국외 연구기관등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은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기준법규법인-90, 2024.07.31

■ 질 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거래에서 현금으로 받은 거래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회 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與,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다주택자 종과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과 지방 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세 폭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은 주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이번 정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 외곽의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내놓은 이번 방안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충분한 수요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유입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일시적인 세제 혜택에 불과해 근본적인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야당 역시 이 정책이 다주택자와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형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과파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지난해 악성채납 2.8조원 징수

국세청이 지난해 악성채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28조원의 추정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로 대폭 확대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현장 수색, 은닉재산 반환청구 소송(사해행위 취소 등)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채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며, 유공 공무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국세청, 2025. 3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법인

①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 요지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사전-2021-법규법인-1529, 2022. 1. 10.)

②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 요지 :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사전-2021-법규법인-1851, 2022. 1. 17.)

③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규법인-132, 2022. 1. 19.)

④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사전-2021-법규법인-1884, 2022. 1. 21.)

5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요지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사전-2022-법규법인-0020, 2022. 1. 25.)

6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7757, 2022. 1. 28.)

7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

❑ 요지 :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⑥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2-법규법인-0010, 2022. 2. 10.)

8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 요지 :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사전-2022-법규법인-0192, 2022. 2. 16.)

9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

10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 요지 :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5127, 2022. 2. 24.)

11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238, 2022. 3. 17.)

1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 대상제외 여부 등

▶ 요지 :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039, 2022. 4. 25.)

1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요지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사전-2022-법규법인-0477, 2022. 4. 28.)

14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 요지 :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사전-2022-법규법인-0492, 2022. 5. 13..)

15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요지 :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503, 2022. 5. 26.)

16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 요지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서면-2021-법규법인-5034, 2022. 6. 30.)

17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17 **요지**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 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에 손금산입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18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18 **요지**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 8. 29.)

19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19 **요지** :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 8. 31)

20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20 **요지** :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 9. 27.)

21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21 **요지** :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서면-2022-법규법인-1844, 2022. 10. 12.)

22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22 **요지**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사전-2022-법규법인-0408, 2022. 10. 25.)

2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지 :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사전-2022-법규법인-1038, 2022. 11. 7.)

2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서면-2021-법규법인-6710, 2022. 12. 15.)

25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 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서면-2021-법인-5959, 2022. 3. 11.)

26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 요지 :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서면-2021-법인-5788, 2022. 3. 16.)

27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지 :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서면-2021-법인-5039)

28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 요지 :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서면-2021-법인-5786, 2022. 4. 8.)

29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 요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서면-2022-법인-2984, 2022. 7. 28.)

30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 요지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인-2190, 2022. 12. 30.)

3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4-법인-1121, 2024. 10. 11.)

32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 2024. 12. 9.)

33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 12. 24.)

34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인-0619, 2024. 8. 28.)

35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 4. 3.)

36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 4. 13.)

37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 5. 2.)

38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 § 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의 「주식」에 해당함(사전-2023-법규법인-0370, 2023. 6. 26.)

39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용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기준-2022-법무법인-0199, 2023. 6. 30.)

40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4-소득-2620, 2024. 7. 31.)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1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지(부당행위)

▣ 요지 :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대법원-2022-두-46053, 2022.09.29.)



②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익금)

▶ **요지** :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협의의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합병법인이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합병과는 구별되는 후속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협의의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순수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익금 산입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③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익금)

▶ **요지** : 이 사건 분할·합병은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해 부동산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으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할·합병 없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④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지(부당행위)

▶ **요지**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대법원-2021-두-56992 , 2022.02.24.)

⑤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익금)

▶ **요지** :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1-두-45022, 2021. 10. 28.)

⑥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손금)

▶ **요지** :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대법원-2021-두-42481, 2021.

10. 14.)

7]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업무무관자산)

▶ 요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인이 당해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정황이 있더라도, 당해 토지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0-두-56667, 2021. 3. 25.)

8]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해당여부(결손금)

▶ 요지 : 개정 법인세법 §13①후문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할 이상, 납세의무자는 결손금감액경정 통지를 받고 이를 곧바로 다투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해 종전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3788, 2020. 7. 9.)

9]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수익사업 손금해당여부(손금)

▶ 요지 : 비영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한 후 그 이익을 부가금으로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한 경우,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뿐,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32330, 2020. 5. 28.)

10] 기술사용료 채권포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부당행위)

▶ 요지 : 원고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A에게 신기술을 제공하였으나, A가 기술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계장부에 한 번도 계상하지 않았고, 10년 동안 A에게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A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8-두-56459, 2020. 3. 26.)

11]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이 아님(손금)

▶ 요지 :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대법원-2019-두-47315, 2019. 11. 14)

12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부당행위)

▶ **요지** :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

13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가산세)

▶ **요지** :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8-두-44746 , 2018. 4. 25)

14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가산세)

▶ **요지** :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8717, 2017. 12. 7)

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 **요지** :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0980, 2017. 10. 26)

16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손금)

▶ **요지** :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대법원-2017-두-69750, 2017.10.26)

17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손금)

▶ 요지 :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6-두-56981, 2017. 2. 23)

18 법인의 손금 해당 여부(손금)

▶ 요지 : 피고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본 금융자문수수료는 원고는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거래구조개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 것인 바 원고의 손금에 해당함(대법원-2015-두-50146, 2016. 3. 10.)

19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 손금산입 여부(퇴직급여)

▶ 요지 :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대법원-2015-두-50153, 2016. 2. 18.)

20 특수관계법인간 상표권 사용(부당행위)

▶ 요지 : 원고의 상표를 자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고, 그 적정 사용료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수탁자가 해당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함(파기환송-국패취지) (대법원-2018-두-33005, 2023.5.)

21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부당행위)

▶ 요지 :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대법원-2023-두-50288, 2023. 11. 30.)

22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익금)

▶ 요지 :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대법원-2023-두-55405, 2024. 1. 11.)

23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익금)

▶ 요지 :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3-두-51618, 2023. 11.3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14일(금)	3월 17일(월)	3월 18일(화)	3월 19일(수)	3월 20일(목)
미 달 러 (USD)	1451.90	1454.80	1448.00	1447.10	1452.30
일 본 엔 (JPY)	981.64	979.33	969.37	968.74	976.70
영 국 파 운 드 (GBP)	1880.43	1881.13	1880.45	1881.30	1888.79
캐 나 다 달 러 (CAD)	1006.27	1012.77	1012.94	1011.96	1014.00
홍 콩 달 러 (HKD)	186.82	187.17	186.37	186.25	186.91
위 안 화 (CNH)	200.34	200.78	200.11	199.98	200.67
유 로 화 (EUR)	1575.60	1583.26	1581.14	1583.42	1584.10
호 주 달 러 (AUD)	912.74	920.38	924.33	920.43	923.30
싱 가 폴 달 러 (SGD)	1086.79	1091.17	1088.52	1087.31	1091.75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27.15	327.18	325.76	325.56	327.39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국세청, 2025. 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꼭 짚어주는 “밑줄 짝,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합니다.

- 이번 제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

/ 밑줄 짝,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제1회 : 양도소득세 조사사례 /

구분	사례 요지
1	<p>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p> <p>▶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p>
2	<p>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p> <p>▶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음</p>
3	<p>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p> <p>▶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p>
4	<p>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p> <p>▶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p>
5	<p>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p> <p>▶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p>
6	<p>부당한 분할 양도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p> <p>▶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p>



-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하여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 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부담을 축소시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임에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밀줄 짝,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득세법상 “주택”
-------------	-------------------

- 법령(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4)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함

- 판례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

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04-두-14960)

붙임 2

소득세법상 “1세대”

- 법령(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3)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 : ① & ②
 - ①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 판례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대법원2005-두-8443)

붙임 3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 법령(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자본적 지출)으로
 -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
 - * 지출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비교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을 위한 지출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O	X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베란다 샷시 비용 ·냉난방시설의 설치·교체 공사비용 ·방·거실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샷시 공사비 ·방,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등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공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가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마루 공사비 등

붙임 4	공제되는 취득가액
-------------	------------------

□ 법령(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래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①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② 감정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 ③ 환산취득가액 : 양도할 때 거래한 실지거래가액 등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frac{\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text{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759, 국승 종결)

붙임 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

□ 개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 적용

□ 요건

- ①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② (거주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ㄱ.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ㄴ. ㄱ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ㄷ.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 ③ (8년 자경)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
 -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총급여액 (소득법§20②)	3천7백만원1) 이상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①, ②, ③의 소득은 제외 ①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법§19①)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법§45②) ③ 농가부업소득(소득령§9)
사업소득금액 (소득법§19②)	3천7백만원1) 이상	
총수입금액2) (소득법§24①) (소득령§208⑤)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등 : 1.5억 이상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이상	

1) 3천7백만원 요건은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총수입금액 기준은 '20년 귀속분부터 적용

④ (농지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감면의 종합한도

-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붙임 6	실질과세의 원칙
-------------	-----------------

□ 법령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 판례

-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2021-두-57780)
-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 즉,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0억 0만원’으로 정한 매매로서 그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 (중략) ... 즉,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거래가 분할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전체가 완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분할 이행된 각 부분에 대하여 각 양도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님(부산고등법원-2021-누-10982, 국승 종결)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 국세청, 202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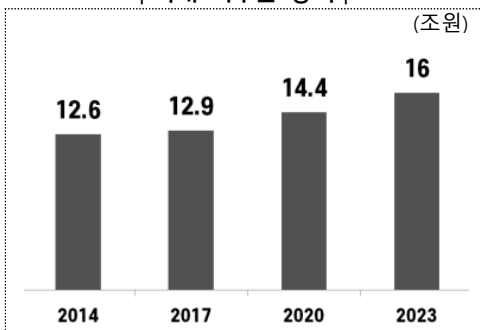
◆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 '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 확인

1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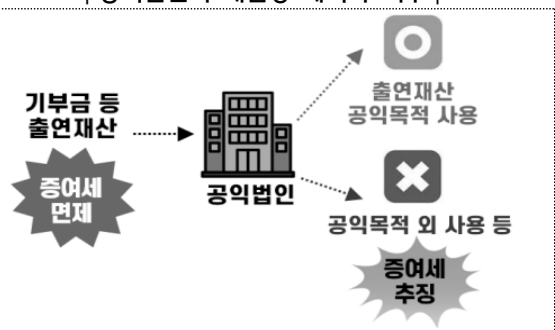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 정의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상증령 제12조) → 예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

| 국내 기부금 총액 |



| 공익법인의 세법상 혜택과 의무 |



□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 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2 '24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유형 1)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유형 2,3)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하여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유형 1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3.3억원 추징)

-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유형 2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8억원 추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 지급
 -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여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
 -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

유형 3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9억원 추정)

□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의무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29억원 추정

- ⇒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 불가,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로 재직 불가
- ⇒ [위반 시 제재] 임직원·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

②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6.9억원 추정

-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등)
- * 수익용으로 운용 시, 발생한 이자·임대료 등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함
- ⇒ [위반 시 제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증여세 부과

③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3.9억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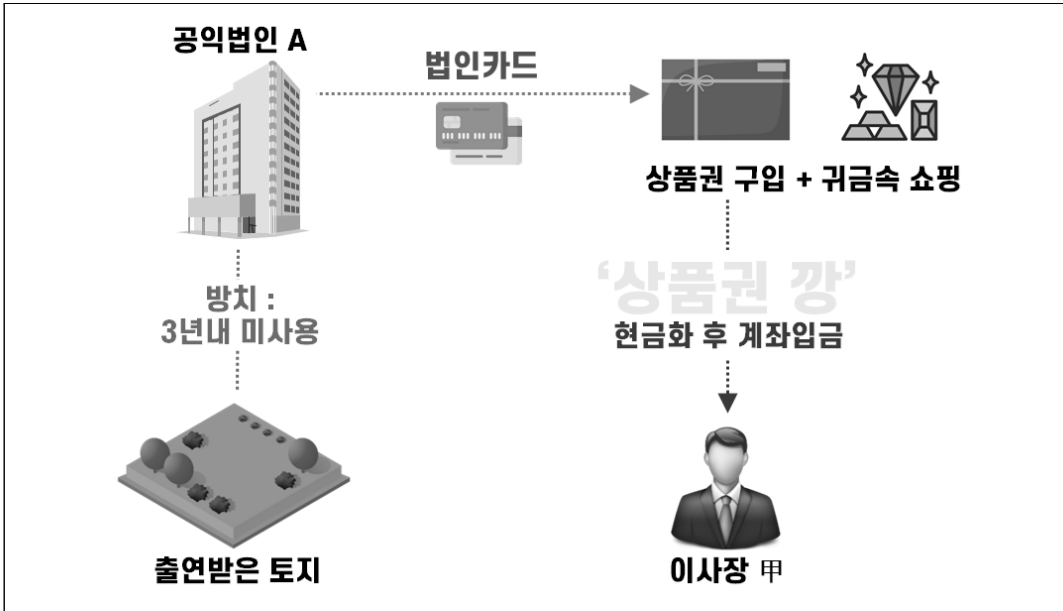
- ⇒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연재산 사용명세를 기재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등의 홈택스 공시 등
- ⇒ [위반 시 제재] ㉠해당연도 수입+출연재산, ㉡미제출 등 금액, ㉢자산총액에 가산세 부과

3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습니다.
-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붙임 불성실 공익법인 추정사례

사례 1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공익자금 사적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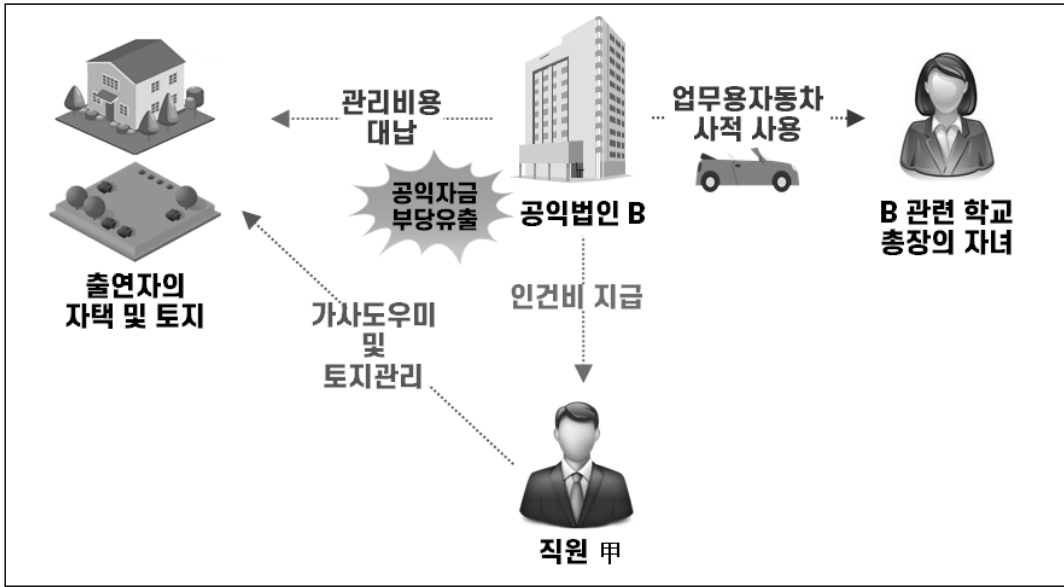
□ 주요혐의

- 공익법인 A는 상품권 00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였고,
 -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함
- 또한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조치사항

- 이사장甲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0억원, 3년 이상 방치한 임야 가액에 대해 증여세 0억원 추정함

사례 2 [공익자금 사적유용]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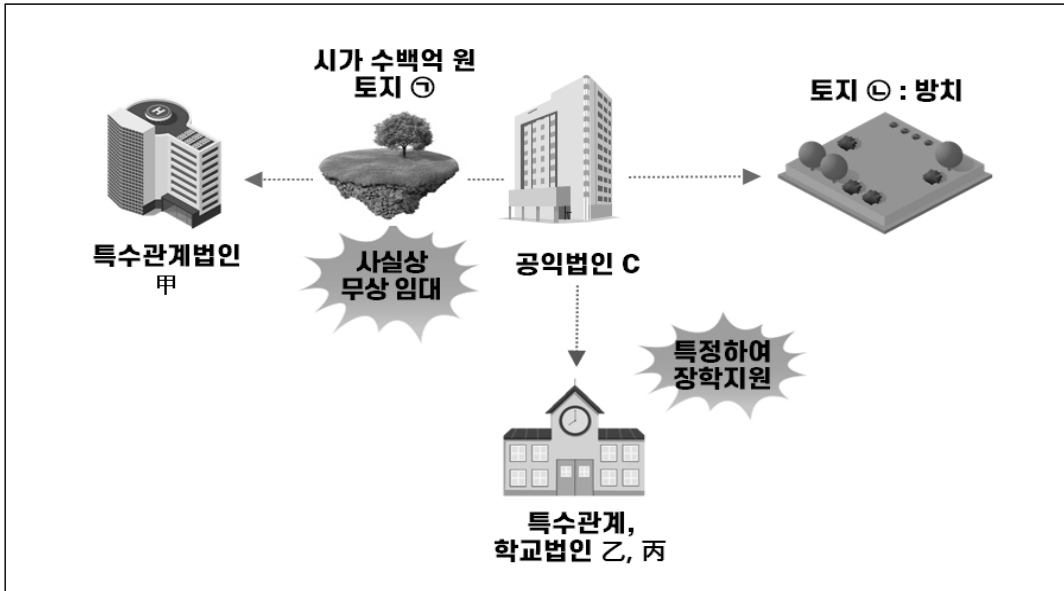
□ 주요혐의

-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키고,
 -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함
-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 조치사항

-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한 직원 甲에게 지급한 급여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백만원 추징함

사례 3 [공익자금 우회증여]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임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장학 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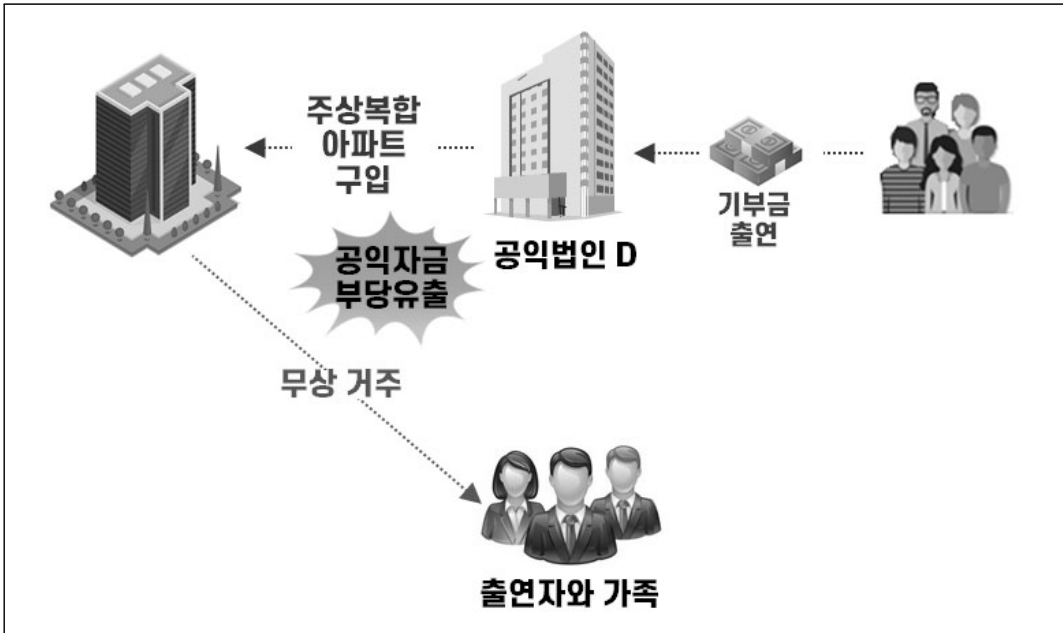
□ 주요혐의

-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000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 그 외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함
- 또한,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한정함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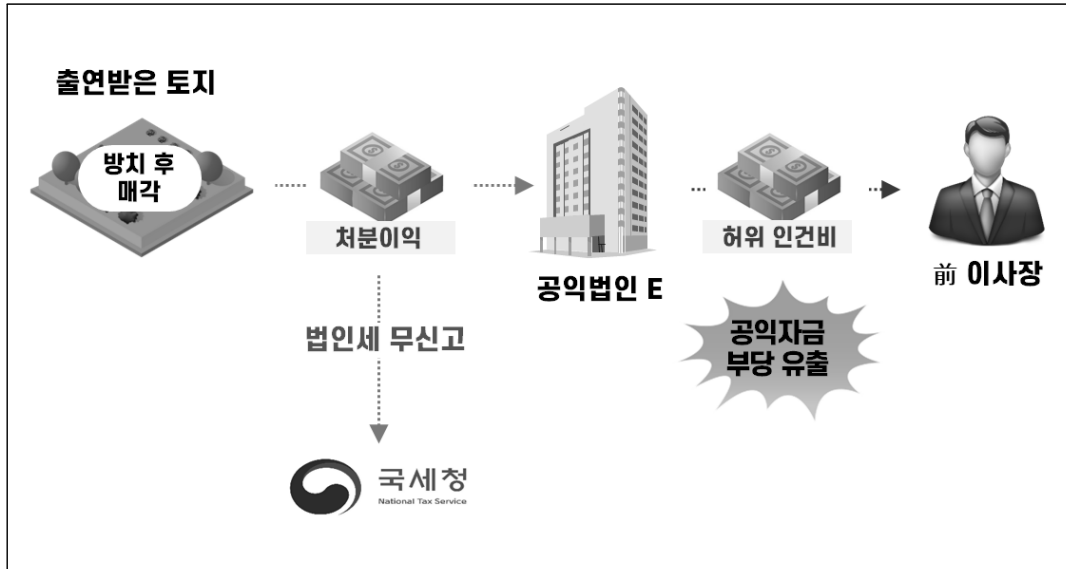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억원을 각각 추징함

사례 4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출연자
[공익자금 우회증여] 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 주요혐의
 -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함
 -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편익 제공
- 조치사항
 -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취득가액 0억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 추정함

사례 5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가공급여 수억원 지급,
[공익자금 우회증여] 출연받은 토지 방치 후 매각한 뒤 양도차익 무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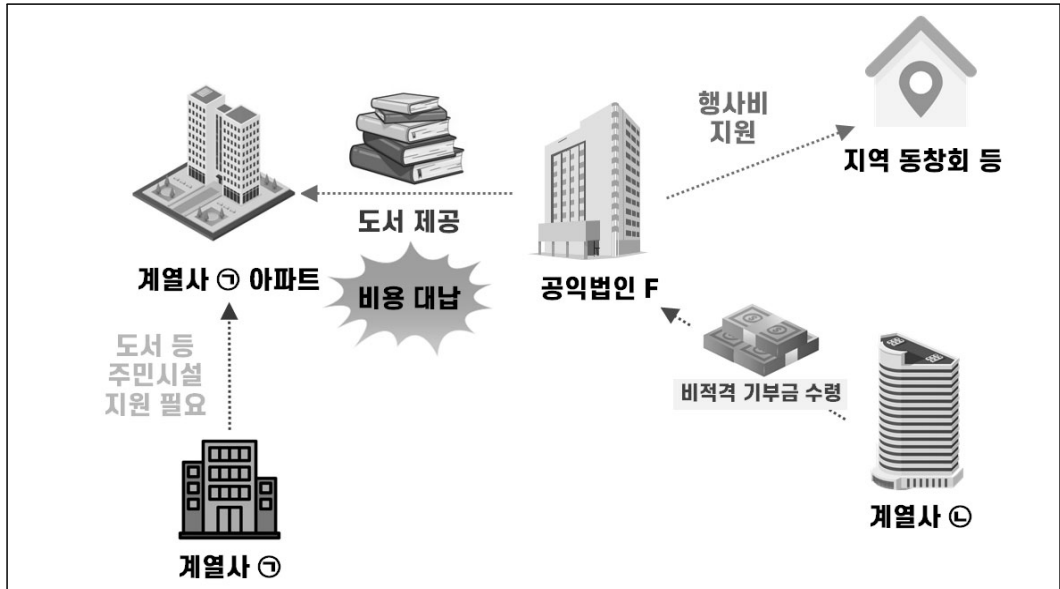
□ 주요혐의

-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前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0억 원을 지급함
- 또한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00억 원에 대하여 무신고 함

□ 조치사항

- 근무하지 않은 前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00억원 추징함

사례 6 **대기업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하여 계열사 비용을 대납,**
[공익자금 우회증여] 공익법인 지위 상실 이후에도 기부금 수령



□ 주요혐의

-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 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
- 또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출연받은 기부금을 0억원 지출함
-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0억원을 부당 수령함

□ 조치사항

-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도서 가액 00억원과 동창회 등에 지출한 0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을 추징하고,
-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이후 기부받은 0억원의 경우, 증여세 00백만원에 더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법인세 00백만원을 추징함

상장회사 결산시즌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유의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5. 2

-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집중감시 중 -

- ◆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 ◆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께서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들께서도 결산시즌중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사례) ①실적 부진 공시 前에 주식 매도, ②감사의견 적정 공시 前 주식 매수, ③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해 시세 부양, ④결산정보 조작 후 상장

I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유형 및 특징

1 불공정거래 유형

◆ 결산시기 상장회사 불공정거래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18개사)으로
 - * ('22년) 6건 → ('23년) 6건 → ('24년) 9건
 -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

(단위: 건, %)

구분	22년		23년		24년		합계	
	건수	비중	사건	비중	사건	비중	사건	비중
전체	44		67		58		169	
결산 관련	6	(100%)	6	(100%)	9	(100%)	21	(100%)
미공개	5	(83%)	6	(100%)	6	(67%)	17	(81%)
부정거래	-	-	-	-	3	(33%)	3	(14%)
복합	1	(17%)	-	-	-	-	1	(5%)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하였습니다.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행위(17건)의 중요정보 현황>

(단위: 건)

구분	22년	23년	24년	합계(비중)
악재성	4	5	5	14(82%)
감사의견 비적정	4	3	-	7(41%)
경영실적 악화	-	2	5	7(41%)
호재성	1	1	1	3(18%)
합계	5	6	6	17(100%)

◆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입니다.

-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서 대주주(14명), 임원(25명)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였습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현황>

(단위: 명, 억원)

혐의자 유형	혐의자 수			
	22년	23년	24년	합계(비중)
대주주	4	5	5	14(21%)
임원	13	5	7	25(38%)
직원	-	1	3	4(6%)
기타 (1차 정보수령자 등)	19	3	1	23(35%)
전체	36	14	16	66(100%)

2 불공정거래 특징

- ①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18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 * 18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은 11개사(61.1%)
 -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지속 적자*를 나타내고, 부채비율('23년 기준)은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에 해당됩니다.
 - * ('21년) △59.2억원 → ('22년) △86.2억원 → ('23년) △18.1억원
- ②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비적정 : 9개사, 제출 지연 : 6개사
- ③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회사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CB를 발행하였으며,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④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18개사의 최대주주 지분율(23년말)은 평균 26.9%로 여타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43.1%)보다 16.2%p 낮으며, 18개사 중 13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

○ 또한,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18개사 중 10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사명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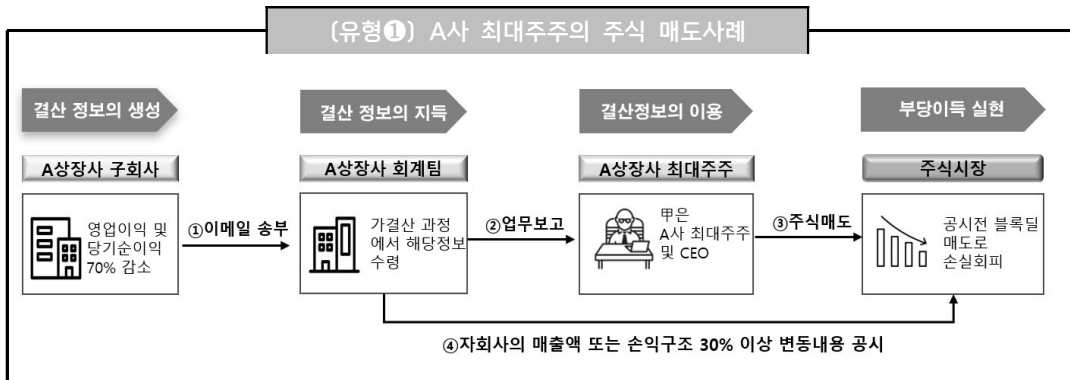
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18사)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14사)로 이중 일부 회사(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II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사례

☑ (유형 ①) 실적 부진 공시 전 주식 매도 (미공개정보 이용)

□ A사 최대주주 甲은 A사 회계팀이 종속회사의 가결산 자료를 수령한 뒤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약 70% 감소한 사실을 지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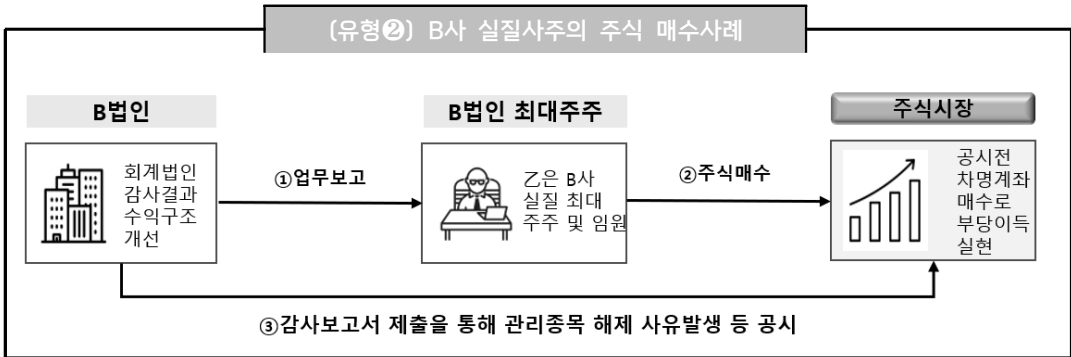
○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하였습니다.(→甲 고발)



☑ (유형 ②) 감사의견 적정(관리종목 해제사유) 공시 전 주식 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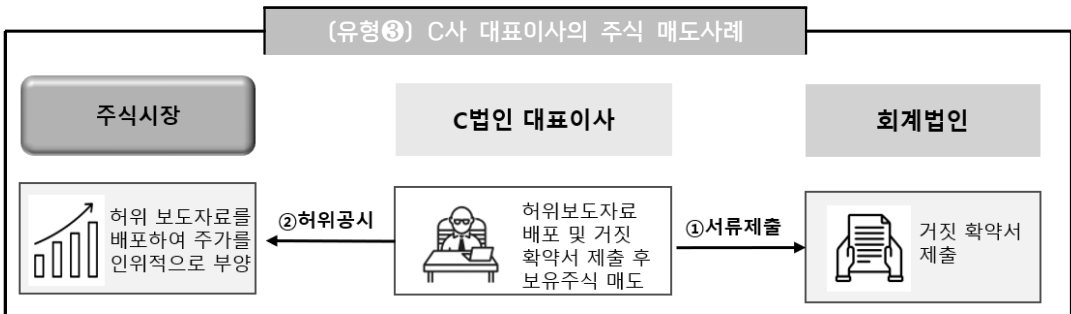
□ B사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약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 B사 실질사주 乙은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가 끝난 시점에 동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B사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乙 고발)



☑ (유형 ③) 결산 전 품문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후 주식 매도 (부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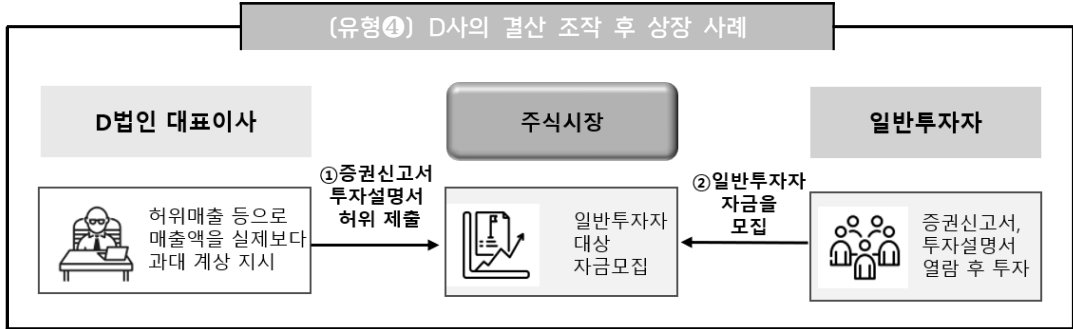
- C사 대표이사 丙은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견거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감사인에게 본인 차입금을 C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C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였습니다.(→丙 수사기관 통보)



☑ (유형 ④) 결산정보를 조작한 후 코스닥 상장 (부정거래)

- D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丁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회사 성장의 외관을 형성하고 높은 공모가격 산출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허위인식하거나 과대계상한 후,

-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거짓작성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공모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丁 고발)



III 회사 내부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1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 등은 지득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 ※ (상장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24.7월부터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당해 회사 주식 등 매매시 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거래목적·가격·수량 등)을 공시하여야 함
(「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4.7.9. 보도자료) 참조)
- 평소, 상장회사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K-ITAS) >

-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http://sims.krx.co.kr>)

2 투자자들은 결산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시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상장사의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현혹될 수 있는 허위 공시나 풍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적극적인 제보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1월부터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조사 결과 확인된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금융감독원)

■ 인터넷 :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② 민원신고 → ③ 불법금융신고센터 → ④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우 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우편번호 07321)

IV 향후계획

-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으로
 -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장사를 대상으로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장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또한 강화하겠습니다.